

의안번호	제 11 호
의결년월일	1999. 1. 21.
의결사항	원안가결

발의자	정기형 의원외3인
제출 년월일	1999. 1. 21.

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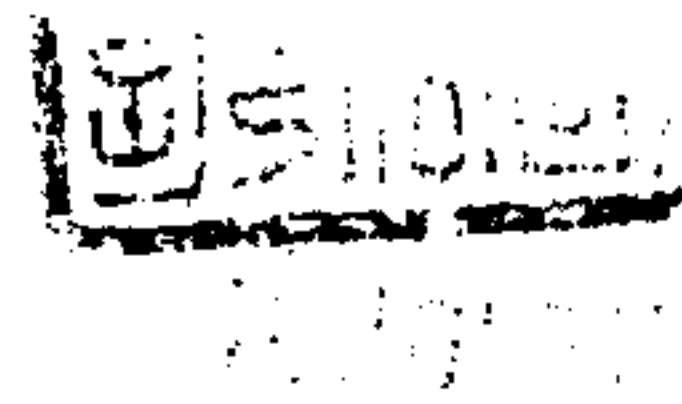
수신 보은군의회의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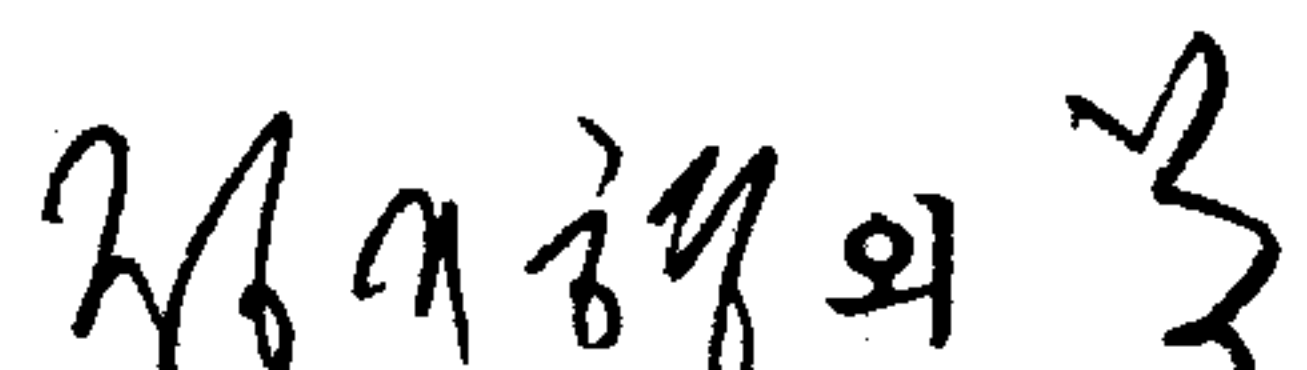
제목 보은군의회공청회 운영규정안

보은군의회공청회 운영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

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보은군의회공청회 운영규정안 1부. 끝.



발 의 자 :  인
(찬성의원서명 : 붙임참조)

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정(안)

1. 제안이유

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진술인의 신청 및 진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자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때는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전 14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 승인을 얻는다.
- 공청회의 일시, 장소, 안건, 진술인의 신청방법등을 게시판 및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공청회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이유 및 찬반의 뜻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진술인 선정은 위원회가 선정하되, 찬성 또는 반대자를 적절히 안배하여 결정한다.
- 진술인의 발언이 안건의 범위를 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 있을때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보은군의회규정 제 4 호

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(이하“회의규칙”이라 한다.) 제5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청회 개최의 절차) ①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승인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개최전 14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를 승인한 때에는 공청회의 일시, 장소, 안건, 진술인의 신청방법등을 게시판 및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진술인의 신청)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그 이유및 안건에 대한 찬반의 뜻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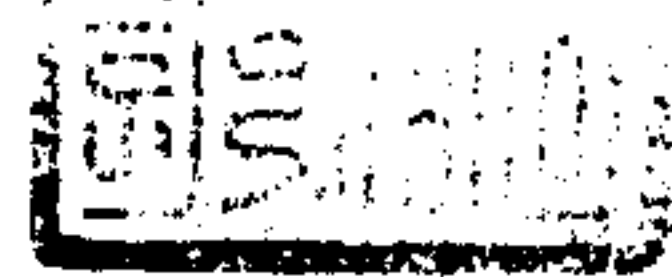
제4조(진술인의 선정) 진술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청한 자와 그외의 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정하되,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안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진술인의 발언) ①진술인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진술인의 발언이 안전의 범위를 넘거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할수 있다.

제6조(진술인에 대한 질의등) ①위원은 진술인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.

②진술인은 위원에게 질의할 수 없다.



제7조(결과보고등) 위원장은 공청회의 경과 및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공청회 개최 승인 신청서

보은군의회 의장 귀하

위원회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신청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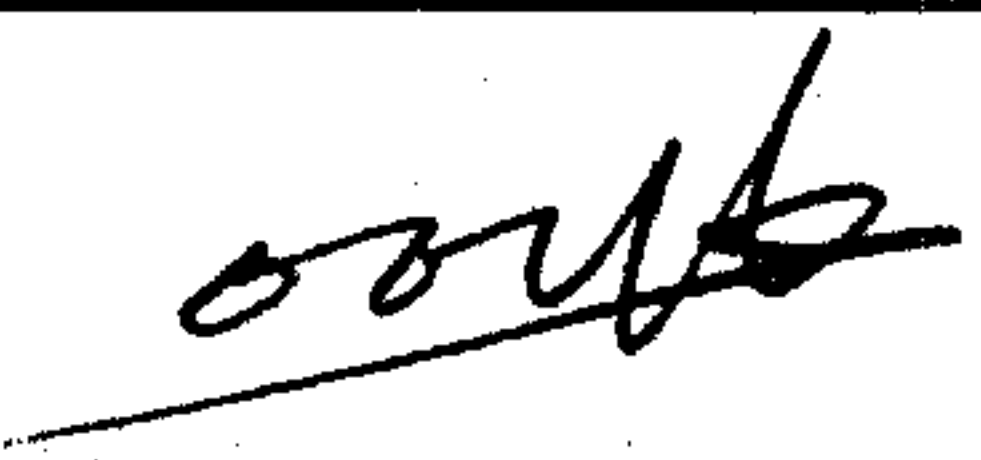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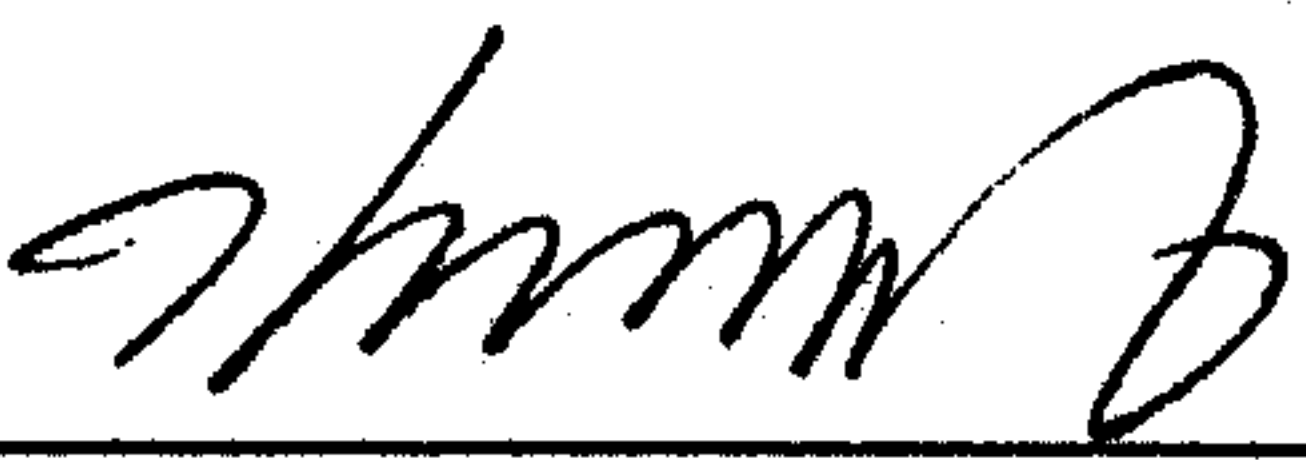
1. 안 건 :
2. 일 시 :
3. 장 소 :
4. 진술인 :
5. 경 비 :
6. 기타 참고사항 :

1999. . .

위원장

(인)

의 안 찬 성 의 원 서 명

성 명	서 명	(인)
이 기 주		
홍 태 위 賴		
유 재 명		
		